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인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20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1일

발 의 자 : 황인구 의원(1명)

찬 성 자 : 권수정, 권영희, 김경우,
김기대, 김기덕, 김정태,
김제리, 김종무, 김태수,
김평남,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송도호,
송아량, 양민규, 유정희,
이광호, 이동현, 이영실,
이정인, 임종국, 장상기,
전석기, 채유미, 최웅식,
추승우, 홍성룡, 황규복
의원(30명)

1. 제안이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21.3.9.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법제화 및 문재인 정부의 2017년 '베를린 구상' 발표 이후 지속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뒷받침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2.1.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정책 수립·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7조의 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 헌법」, 「지방자치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7조의2(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① 시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역량의 결집 및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시 차원에서 추진되는 한반도의 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를 둔다.
- ②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고,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6조제3항을 준용하고, 제37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8항은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37조의2(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p> <p>① <u>시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역량의 결집 및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시 차원에서 추진되는 한반도의 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를 둔다.</u></p> <p>② <u>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고,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 <u>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6조제3항을 준용하고, 제37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8항은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u></p>

문서번호	2021072900000004
------	------------------

미첨부사유서 (2호)

요청인 : 황인구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공도연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7.29	
회신일 : 2021.08.06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7조의2에서 한반도의 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2호) 사유

- 조례안은 제37조의2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운영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나 위원회 구성 인원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가 어려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 예산 현황 별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분석관(주무관) 공도연

☎ 02-2180-7952

e-mail : ehds0@seoul.go.kr